

**개정본 3**  
**(2017.6.19)**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전환전략**  
**ISO/TS 16949 > IATF 16949**

-----

**출처 [www.iatfglobaloversight.org](http://www.iatfglobaloversight.org)**

## 머리말

여기에 “IATF 16949”로 언급된 IATF 16949 초판은 IATF에 의해 개발된 개정된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을 나타냅니다.

개정된 규격은 ISO/TS 16949:2009를 취소하고 대체합니다.

ISO/TS 16949:2009 인증서는 2018년 9월 14일 이후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ISO/TS 16949:2009에서 IATF 16949로의 전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IATF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인증 받는/또는 ISO/TS 16949를 사용하는 조직들, 인증기관들, 심사원들)에게 적용되며, 2016년 4월에 IATF global oversight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이전에 전달된 IATF 전환 계획을 대체합니다.

이 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이 문서의 향후 버전에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개정본 1 – 2016년 10월 3일자

개정된 IATF 전환전략 문서는 IATF에 승인된 FAQ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법 오류들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 4페이지 및 10페이지에 나와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두 가지의 타이밍 요구사항에 대해 일치된 내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 4페이지에 나와있는 마지막 중요항목의 착오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 인증기관은 전환심사 팀으로부터 한 명의 심사원을 따라오는 사후심사에 심사 팀 멤버로써 참여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허락될 것입니다.
- 추가적인 설명은 (새로운) 순차적인 심사 주기가 전환심사의 마지막 날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 개정본 2 – 2016년 11월 21일자

IATF 전환전략 문서의 두 번째 개정본은 전환심사 팀 요구사항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및 FAQ 11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변경내용을 참고하세요.)

## 개정본 3 – 2017년 6월 19일자

이번 전환전략 문서 세 번째 개정본은 오프사이트 문서 검토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인증기관이 오프사이트 문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4-5페이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변경 내용을 참고하세요.)

## 전환 주기 요구사항

2017년 10월 1일 이후로는 ISO/TS 16949:2009에 대한 어떤 심사(신규, 사후, 갱신, 전환)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ISO/TS 16949:2009로 인증 받은 조직들은 IATF rules, section 5.1.1에 정의되어 있는 허용기간 요구사항에 따라 ISO/TS 16949:2009에 대한 현 심사 주기에 맞춰 전환 심사를 통하여 새로운 IATF 16949로 전환해야 합니다.

---

**비고: 이전에 전달되었던 option 2는 철회/취소 되었습니다.**

---

### 허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약 다음 정기 심사가 연간 사후심사일 경우, 전환심사는 6개월, 9개월 또는 12개월(-3달/+1달) 심사 주기로 관련 기간을 맞춰야 합니다. 그 기간이 맞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인증기관은 IATF Rules, section 8.1에 따라 인증취소 프로세스를 착수시켜야 합니다. 관련 현장 심사는 IATF Rules, section 8.4에 따라 재 계획된 전환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만약 다음 정기 심사가 갱신심사라면 허용기간은 IATF rules, section 5.1.1에 따라 갱신 심사에 대한 갱신 허용기간 요구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3달/0일)
- IATF rules, section 5.1.1에 나와있는 기간(또는 IATF rule, section 8.4에 인증취소 프로세스의 기간)에 따라 전환심사가 실시가 실패하면 아래 승인된 기간에 따라 신규인증심사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IATF 16949로의 신규인증심사가 조직의 ISO/TS 16949:2009에 대한 마지막 심사의 18개월 내에 진행된다면, 1단계 문서검토 심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10페이지의 D를 확인해 주세요. - 문장 추가됨) 이 경우 인증기관은 IATF oversight

office로부터 waiver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ISO/TS 16949:2009로 인증 받은 조직은 IATF 16949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 신규 IATF 인증기관으로 전환 시
- 특별심사 또는 ~~현재 ISO/TS 16949:2009의 심사주기에 적합하지 않는 기타 심사(삭제됨)~~

## 전환심사 요구사항

전환심사는 IATF Rules Table 5.2에 따라 갱신심사의 일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후의 심사 주기는 전환심사의 마지막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문장 추가됨)

전환심사는 갱신심사와 동등하게 전체 시스템 심사를 해야 하고 IATF Rules section 6.8에 정의된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심사기획 프로세스는 아래 특별 요구조건과 함께 IATF Rules section 5.7에 정의된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장 방문 없는 문서 검토는 전환심사 이전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현장 방문 없는 문서 검토는 IATF 16949 요구조건에 따라 증거를 포함하여 고객의 품질 경영 시스템 문서(즉, 품질 매뉴얼 및 절차)의 최소한의 검토로써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직이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시간의 현장 시작회의 이전에 그 누락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계획은 현장에서 최소 0.5의 추가 심사 일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삭제)~~

---

주의: IATF는 이전에 전달되었던 의무적인 추가 0.5-1.0의 심사일수를 철회하였습니다.

---

만약 고객이 인증기관에 심사 전까지 오프사이트(현장 외) 문서검토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심사는 시작되지 못합니다.

심사 전에 고객이 제공하는 문서를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온사이트(현장) 심사

출처: [www.iatfglobaloversight.org](http://www.iatfglobaloversight.org)

를 추가하는 것은 인증기관의 재량입니다.

만약 전환심사가 요구되는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없다면 그 고객은 신규심사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이트 또는 원격에 있는 모든 지원 기능들은 ISO/TS 16949:2009 심사 주기에 맞춰 전환 프로세스에 포함되어야 하며, 전환 심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예외적인 상황에서, 원격지원 기능은 그것이 지원하는 제조 현장에서 전환 심사 이전에 IATF 16949로 전환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 현장이 IATF 16949로 인증 받도록 긍정적인 인증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지원 기능이 심사되었고, 어떤 자동차 규격 버전(ISO/TS 16949:2009 또는 IATF 16949)인지 보장하기 위해서, 제조 현장의 전환심사 보고서는 아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모든 원격 지원 기능
  - 그 원격 지원 기능이 심사된 자동차 규격 버전 (ISO/TS 16949:2009 또는 IATF 16949)
  - 원격 지원 기능에 이러한 심사들의 완료일자
- 만약 원격 지원 기능에서 마지막 심사가 ISO/TS 16949:2009로 심사되었다면, 보고서는 IATF 16949로의 전환심사에 대해 예정 또는 계획된 일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격 지원 위치의 심사 보고서는 또한 그 마지막 내부 시스템 심사가 실행된 자동차 규격의 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ISO/TS 16949:2009 또는 IATF 16949)
- 예외적인 경우에, 원격 지원 기능이 관련 제조 현장에서의 전환심사 이전에 IATF 16949로 전환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조직은 완벽한 갭 분석을 보장해야 합니다. IATF 16949의 적용 가능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세부 조치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제조 현장의 심사에서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 이 상황에서 조직이 갭 분석과 세부 조치 계획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제조현장 심사는 실패로 간주되고, 그 현장은 완전한 최초심사(1,2단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 인증기관에 대한 전환 심사 팀의 요구사항

전환심사는 IATF 16949에 대한 심사에 대해 이미 그들의 적절한 자격 있는 제 3자 심사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IATF 16949에 따라 전환심사와 최초 인증 심사 수행이 허용되기 전에 심사원들은 IATF ADP 시스템 내의 IATF 16949 및 IATF rules 퀴즈, 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IATF는 요구합니다;

- IATF ADP에 등록된 모든 활동하는 심사원들은 그들이 전환심사 수행 허용되기 전에 IATF 16949 및 IATF Rules 퀴즈 둘 다 (80% 이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 2017년 6월 30일까지, IATF ADP에 등록된 모든 활동하는 심사원들은 (필요한 갱신을 포함하여) IATF 16949 및 IATF Rules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비활성화로 적용될 것입니다. (심사원 자격이 정지될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3-XX 또는 4-ADP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IATF ADP에 등록된 모든 심사원들은 IATF ADP 평가 시간에 대한 일정관리 이전에 IATF 16949 및 IATF Rules training 및 퀴즈를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은 전환심사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 승인된 기간과 함께 갱신 심사에 대해 IATF Rules section 5.6에 정의된 것처럼 심사 팀을 수립하기 위한 모든 요구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증기관은 이전 심사 주기로부터 오직 전환심사에 참가하기 위한 한 명의 심사원 이상을 지명해도 좋습니다. (즉, 이전 심사원) ~~이러한 이전 심사원(들)은 따라오는 사후 심사 주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차후의 3년 심사 주기에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환심사를 진행하는 심사팀 중 한 명의 멤버는 따라오는 사후심사에 팀원으로써 참여하도록 하라될 것입니다. 변경 수정됨/Rev1)~~ 이 상황에서 인증기관은 관련 IATF Oversight Offices로부터 waiver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시 개정됨(Rev2) : 인증기관은 심사팀장을 포함하여 심사팀원으로써 전환심사와 차후 사후 심사들에 참여하기 위해 이전심사 주기(1년, 2년 또는 3년의 기간)로부터 한 명 이상의 심사원을 지명해도 좋습니다.(FAQ11참고) 이 상황에서 인증기관은 관련 IATF Oversight Offices로부터 waiver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기관은 심사일수가 5일을 초과하지만 최대 7일의 경우 1명의 심사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waiver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환심사 부적합 관리

인증기관이 전환심사에서 부적합을 확인할 때, 고객과 인증기관은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IATF Rules section 5.11에 정의된 것처럼 부적합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준수
- IATF Rules section 8.1 c) 및 8.2에 정의된 것처럼 인증취소 프로세스의 착수에 대해 준수. 만약 중부적합이 전환심사에서 확인된다면, IATF Rules section 8.3에 따라 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 IATF 16949 인증서 발행

인증기관은 IATF Rules section 5.12에 정의된 대로, 전환 심사에 대해 아래 특정요구사항 및 승인된 기간에 따라 인증 결정 프로세스의 모든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합니다.

- 인증기관은 기존의 ISO/TS 16949:2009 인증서의 만료일자 이후에 긍정적인 인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환심사의 마지막 날로부터 최대 120일 이내에 그 결정이 되는 한 가능합니다.

---

**주의:** 이것은 신규 IATF 16949 인증이 발행되기 전에 고객의 ISO/TS 16949:2009 인증이 만료되고 인증서의 유효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

긍정적인 인증 결정이 나오면 인증 기관은 IATF 16949 인증서를 조직에 발행합니다. 이 인

증서들은 발행일자(공정적인 인증결정일자) 및 유효기간(발행일자 + 최대 3년에서 1일을 뺀 날짜)을 포함합니다. 이 새로운 인증서는 새로운 IATF 번호로 발행됩니다.

---

**주의: 현재 ISO/TS 16949 인증서(여전히 “발행” 상태라면)는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IATF 데이터베이스에 대체됩니다.**

---

## **IATF 16949로의 최초 인증**

최초 인증을 원하는 모든 조직들은 2017년 10월 1일까지 ISO/TS 16949:2009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SO/TS 16949:2009 인증은 오직 2018년 9월 14일까지만 유효합니다.

2017년 10월 1일 이후에, 조직은 IATF 16949 규격만 심사 및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ATF 16949로 최초 인증을 원하는 조직들에 대해 심사일수를 결정할 때, 아래 상황/조직들에 대해 감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 기존 ISO 9001 인증 보유 조직**

기존 ISO 9001:2015에서 IATF 16949로 업그레이드 심사 시 최초 2단계 심사일수는 IATF Rules section 5.2, Table 5.2에 정의된 대로 신규 2단계 심사일수의 30% 이상 감소될 수 없습니다.

- IATF 16949 인증에 대한 인증기관은 기존의 ISO 9001:2015 인증기관과 동일해야 합니다.
- ISO 9001:2015로 인증 받은 고객이 새로운 인증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IATF 16949로 업그레이드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새로운 인증기관에 의해 ISO 9001:2015로 적어도 1회의 사후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인증범위가 최초 인증심사에서 확장된다면, 업그레이드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최초 2단계 심사일수 100%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직이 ISO 9001:2008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업그레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최초 2단계 심사일수 100%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 **B. 기존 VDA 6.1 및 ISO 9001 인증 보유 조직**

VDA 6.1 및 ISO 9001:2015에서 IATF 16949로 업그레이드 심사 시 최초 2단계 심사일수는 IATF Rules section 5.2, Table 5.2에 정의된 대로 최초 2단계 심사일수의 50% 이상 감소될 수 없습니다.

- 만약 조직이 VDA 6.1 및 ISO 9001:2008 인증을 가지고 있다면, 업그레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최초 2단계 심사일수 100%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인증범위가 확장된다면, 업그레이드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최초 2단계 심사일수 100%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 **C. 기존 ISO/TS 16949 LOC(적합성인증) 보유 조직**

IATF Rules, section 5.14.4에 정의된 대로 업그레이드 할인은 ISO/TS 16949:2009 LOC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최초 2단계 심사일수 100%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 **D. 정해진 기간 내에 전환이 되지 않은 이전에 ISO/TS 16949 인증이 철회(withdrawal)된 조직**

철회된 ISO/TS 16949:2009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 최초 2단계 심사일수는 Rules, section 5.4 h)에 나와있는 갱신심사 일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심사일수는 최초 심사일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 최초심사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철회한 인증기관과 같거나, ~~농촌 전환심사의 12개월 이내에 신규 2단계 심사가 예정된 경우에는(삭제됨)~~ 같은 경우는 1단계 문서검토 심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타이밍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4페이지(타이밍에 따른 전환심사 진행 실패관련내용)를 참고해 주세요. (수정 변경됨)
-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1단계 현장방문은 요구됩니다.

## 전환에 대한 질문

~~이 전략에 대한 추가사항은 추후 이 문서의 개정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됨)~~

1. ISO/TS 16949:2009에서 IATF 16949:2016으로 전환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언제입니까?

2017년 1월 1일입니다.

2. 전환 전략 내용에서 '조직은 전환할 수 없고 동시에 IATF 16949로 전환심사를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ISO/TS 16949를 인증 받은 조직이 새로운 인증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증기관이 최초 인증심사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까?

만약 조직이 유효한 ISO/TS 16949:2009 인증을 가지고 있다면, 전환전략의 의도는 어떤 새로운 인증기관도 새로운 고객으로써 인증 받은 조직을 수락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만약 조직이 기존하는 인증기관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더 이상 ISO/TS 16949:2009로 인증 받지 않는다면 조직은 새로운 IATF에서 인정받은 인증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3. 조직이 전환심사 시작 전에 IATF 16949를 대비하여 경영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됩니까?

조직은 IATF에서 인정받은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전환심사 이전에 경영검토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IATF 16949:2016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경영검토를 통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환심사의 타임에서 이것은 ISO/TS 16949:2009 요구사항에 따라 이전 경영검토 및 IATF 16949:2016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따른 보충적인 경영검토의 조합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조직은 전환심사의 시작 전에 IATF 16949를 대비하여 내부 시스템 심사를 수행해야 합니까?

조직은 IATF에서 인정받은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전환심사 이전에 IATF 16949:2016의 요구사항에 대비하여 완전한 내부 시스템 심사를 통하여 IATF 16949:2016에 준수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IATF 16949:2016에 대해 완전한 풀 시스템 심사를 통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환심사의 타임에서 이것은 ISO/TS 16949:2009 요구사항에 따라 이전 시스템 심사 및 IATF 16949:2016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따른 보충적인 시스템 심사의 조합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인증기관은 전환심사의 시작 이전에 사전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허락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인증기관은 놓친 심사 계획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기 위해 심사 시작 이전에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최소 0.5MD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전환심사 요구사항)
6. 인증기관이 전환심사 시작 이전에 갭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허락됩니까?  
안됩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7. 문서 검토가 그룹심사 내에서 모든 사이트에 대해 요구됩니까?  
네, 모든 사이트는 품질 경영 시스템과 함께 그룹심사 내에 관련 요구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8. 조직은 전환 심사의 시작 이전에 새로운 IATF 16949 프로세스에 대비하여 12개월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요구되지 않습니다.
9. 그룹심사 스킴의 사이트들에 대해 일반적인 할인이 전환심사에 허락됩니까?  
네, 전환 심사는 갱신심사로써 같은 요구사항에 따라 계산될 것입니다.
10. 한 명의 인증기관 심사원이 7일의 심사를 진행 시 그 심사는 연이어 수행되어야 합니까? 예를 들면 그 심사가 월-금요일과 그 다음 주 월-화요일로 진행해도 됩니까?  
한 명의 심사원이 배정되고 총 심사 일수가 5일이라면 그 사이트의 심사는 IATF 를 5.7항에 따라 연이은 일정으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환심사에 대해 IATF는 사이트의 연이은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획되고 수행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11. 전환 전략 요구사항은 한 명 이상의 심사원이 전환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원들은 또한 연속되는 사후심사에서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전환심사를 수행하는 심사 팀 중 한 명은 심사팀원으로써 따라오는 사후심사에 또한 참여가 허락될 것입니다.~~

→다시 개정됨(Rev2) : 네, 인증기관은 심사팀장을 포함하여 심사팀원으로써 전환심사와 차후 사후심사들에 참여하기 위해 이전심사 주기(1년, 2년 또는 3년의 기간)로부터 한 명 이상의 심사원을 지명해도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증기관은 관련 IATF Oversight Offices로부터 waiver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관련 제조 현장에서 전환심사 이전에 IATF 16949로 전환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RSF에 대해 인증기관 심사원은 완벽한 갭 분석과 자세한 조치계획을 검토해야 합니까?

요구되는 사항은 고객이 현재의 업데이트 된 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갭 분석 문서의 카피본을 인증기관 심사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타이밍, 할당된 책임, 이행 상태와 함께) 이 정보는 심사 기록과 함께 인증기관 심사원에 의해 보유될 것입니다. 이것은 RSF가 IATF 16949 규격을 알고 있고,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그들의 현재 시스템의 분석을 완성하였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한 조치 계획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로써 받아들여집니다. 이 정보는 제조현장에 IATF 16949 인증서를 발행할지 안할지 결정하는데 있어 인증 결정 기능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13. 만약 IATF 16949로의 전환심사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부적합이 100% resolve 또는 기간 내에 종결되지 않는다면 기존하는 ISO/TS 16949 인증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증기관은 IATF 룰 5.11의 모든 요구사항을 따를 것입니다. 이 경우, 전환 심사는 “실패”로써 간주되고 IATF 데이터베이스는 그에 맞춰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ISO/TS 16949:2009 인증은 철회되고, 고객은 신규심사를 시작해야 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14. 만약 그 사이트가 이미 ISO 9001:2015 및 ISO/TS 16949:2009에 따라 인증 받았다면 전환심사에 대한 심사 MD를 할인하는 것이 허락됩니까?

전환심사로 더 이상 할인은 이 상황에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 가능한 할인은 고객이 ISO 9001:2015에서 IATF 16949로 업그레이드를 결정하여 신규심사 2단계 심사일수에 대해 30% 할인되는 것만 허락됩니다.

15. 인증기관은 ISO 9001:2015 및 IATF 16949:2016의 보충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IATF 16949는 독립된 QMS 규격으로 간주될 수 없지만 보충판으로써 이해되어야 하며, ISO 9001:2015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16. 만약 그 조직이 2017년 1월 이후에 특별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그 특별심

사는 ISO/TS 16949 또는 IATF 16949로 진행됩니까?

특별심사의 인증범위는 그 조직이 현재 인증 받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특별심사는 ISO/TS 16949로 수행될 것입니다.

17. 조직이 이미 2016년 8월 10일 “개정된 전환전략”이 발표되기 전에 새로운 인증기관과 계약했다면 그 조직은 ISO/TS 16949에서 IATF 16949로 전환하게 되고 동시에 전환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허락됩니까?

기존하는 인증 받은 조직에 대해 IATF 16949 로의 전환심사는 ISO/TS 16949로 그 조직을 인증한 오직 그들의 기존하는 인증기관에서만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IATF는 계약이 2016년 8월 10일에 개정된 전환전략 발표 이전에 서명되었을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에, 조직은 새로운 인증기관으로 전환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그들의 IATF 16949로의 전환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이 경우 모든 전환심사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만 심사일수는 갱신심사와 동일하지 않고 2단계 심사와 동일하게 됩니다. 인증기관은 전환심사 이전에 관련 감독사무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고, 면제 요청은 2016년 8월 10일 이전 또는 그 날짜에 서명된 계약서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은 면제 번호와 IATF 데이터베이스의 이전 IATF 번호와 함께 전환심사로서 이 심사를 입력해야 합니다.